

## 01 모든 이·미용업소 “최종지불요금표” 게시(‘13.1.31일 시행)

영업장 내부에 부가가치세,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

- ▶ 위반 시 :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(50~100만원) 부과

### 표시품목 수

- ▶ 이용업 : 주요 품목 3개 이상(커트, 면도 등)
- ▶ 미용업 : 주요 품목 5개 이상(커트, 펌, 등)
  - ※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, 모발길이 · 피부상태 · 사용제품의 따라 가격차이,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

## 02 이·미용업소 「옥외가격 표시제」시행(‘13.1.31일 시행)

신고면적이 66㎡(20평) 이상인 이·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손님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부착

- ▶ 위반 시 :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(50~100만원) 부과

### 대상업소

- ▶ 신고 면적이 66㎡(20평) 이상 이용업, 미용업

### 가격표 디자인·규격(※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게시)

- ▶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
  -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/2이내
  - 발광방식, 점멸방식, 동영상, 전기사용 불가
- ▶ 이동이 가능한 방법의 광고물(입간판)은 설치 불가
- ▶ 벽면이용 광고물 표시
  -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1/4 이내로 표시 등
- ▶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색상 사용

### 옥외가격표시 위치

- ▶ 영업소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
- ▶ 창문, 외벽면, 집합건물의 이동통로(1층 로비 · 승강기 입구 등) 게시 가능
  - ※ 내부에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,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.

